

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이은림 의원 외 39명
- 나. 의안번호: 제1085호
- 다. 발의일자: 2023. 8. 14.
- 라. 회부일자: 2023. 8. 21.

2. 제 안 사 유

- 상위법에 따라 조례체계를 정비하고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, 생활악취 실태 조사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·신설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악취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나.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(안 제4조).
- 다.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신설함(안 제5조~제6조).
- 라. 보조금 지원, 신청·교부 및 반환 조치 등의 규정 신설
(안 제8조, 제10조~제12조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악취방지법」

5. 검토 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에 맞춰 조항을 정비하고, 사업자의 책무와 생활악취 발생 저감 지원계획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것임.

<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조항	내 용
제2조	·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
제4조	· 사업자의 책무 신설
제5조, 제6조	· 생활악취 발생 저감 지원계획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
제9조	·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정비
제8조, 10조~제12조	· 보조금 규정 정비

- 안 제2조(정의)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취, 생활악취, 악취배출시설 등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, 안 제4조는 사업자의 생활악취 저감 시책의 참여·협력과 관계 공무원의 검사·진단에 대한 협조 등의 책무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악취 저감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- 안 제5조는 시장이 악취검사,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한 것임.
-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·운영 시,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균등하게 하고, 여비 지급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, 위원회 관련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

관한 조례」를 따르도록 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- 안 제8조(보조금 지원)는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생활악취 저감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, 제10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, 제11조에는 사업자의 신고 의무, 제12조에는 보조금 반환 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절차를 따르고 있음.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의, 사업자의 책무, 지원계획, 보조금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위원회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,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음.